

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최기찬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
며,
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서울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
는 것입니다.

이를 위해

안 제4조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